

2016년 한 해가 어느덧 지나고 2017년이 밝았습니다. 이에 강남노무법인에서는 자문사 담당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강남노무법인에서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 연 1회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 ■ 최저임금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시급 6,030원에서 7.3%인상된 시급 6,4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51,760원 (유급주휴시간 별도 지급),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월 1,352,23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6,470원 × 209시간)입니다.

##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등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설정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향 조정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유.사산 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

는 계속하여 상승하여 왔음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  
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급여의 월 상한액이 150만원  
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6호]

이로써 예컨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의 정부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  
업 기준)은 기존 최대 405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 ■ 육아휴직 등 부여에 대한 고용지원금 조정 등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었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간접노무비)이 2017년 1월 1일부  
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  
시 제2016-70호]

육아휴직 부여시	기존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초로 육아휴직이 나온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센티브 10만원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대기업	근로자 1,000인 이상 월 5만원, 근로자 1,000인 미만 월 10만원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기존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2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	월 10만원

## ■ 4대보험료율 변경 내용

###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요율은 2016년 기준소득월액 기준 9%(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50%인 4.5%를 각각 부담.)가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월 434만원)과 하한액(월 28만원)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다가 추후 2017년 7월 1일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 2. 건강보험

기존 2016년 건강보험료율인 6.12%(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06%) (보수월액 상한액 : 월 7,810만원, 하한액 : 월 28만원)와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6.55%)이 2017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은 2016년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0.25% (150인미만), 0.4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65% (150인 이상 ~ 1000인미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 이외의 기업), 0.85 % (1000인 이상 및 국가 및 지자체 사업) (기업규모별로 사용자가 100% 부담)	1.3% (근로자 사용자가 보험료의 50%인 0.65%를 각각 부담)

#### 4. 산재보험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별도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일부 업종의 통합(“석탄 광업”, “채석업”이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통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업종에서 보험료율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험료율은 첨부한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 ■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및 서비스 안내

####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신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행일 역시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추후 시행일자가 정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종전에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강남노무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비스 제공 안내

이처럼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상당 부분 면제받았던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도 최근에는 상당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강남노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고자 2017년에는 산업안전분야의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여 자문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시작으로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과장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건설기술교육원, 산업체 등 다수 강연 활동 경험이 있는 강남노무법인 이종호 노무사가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자문사에 대하여 연 1회 무료로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자문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정유년(丁酉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및 문의: 강남노무법인 / TEL. 02-539-0098

# 강 남 노 무 법 인